



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와 (사)한국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1. 목 적 : 본 협약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2. 협력분야 : 양 기관은 지역의 주거실태를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.
3. 협력내용 :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 - 가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정보, 사례 및 프로그램의 공유
 - 나. 신규사업 및 캠페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제반 업무
 - 다. 주거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모금/홍보 활동
 - 라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제반업무
4. 합의정신 : 성북구와 (사)한국해비타트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협약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.
5. 권리·의무의 승계 : 본 협약 체결 후 양기관의 명칭, 대표자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6. 유효기간 :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상호간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12일

성 북 구 청 장
김 영 배

(사)한국해비타트 대표
송 영 태



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



(사)한국해비타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1. 목 적 : 본 협약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2. 협력분야 : 양 기관은 지역의 주거실태를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.
3. 협력내용 :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 - 가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정보, 사례 및 프로그램의 공유
 - 나. 신규사업 및 캠페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제반 업무
 - 다. 주거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모금/홍보 활동
 - 라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제반업무
4. 합의정신 : 성북구와 (사)한국해비타트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서 협약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.
5. 권리·의무의 승계 : 본 협약 체결 후 양기관의 명칭, 대표자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6. 유효기간 :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상호간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12일

(사)한국해비타트 대표
송 영 태

성 북 구 청 장
김 영 배
